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최광옥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책토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2항)
 -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⇒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-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제3항)
 - 구성 운영한다.
 - ⇒ 구성하여 운영하되,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